# 사 내 벤 처 운 영 규 정

## 목 차

저	1장 총칙	· 1
	제1조 목적	· 1
	제2조 적용범위	· 1
	제3조 용어의 정의	· 1
저	2장 추진체계	· 1
	제4조 담당부서의 역할	· 1
	제5조 사내벤처팀 이행사항	.2
	제6조 평가위원회	.2
	제7조 심의위원회	.2
	제8조 서면심의	. 3
	제9조 위원의 제척 등	. 3
저	3장 사내벤처 신청 및 선정	• 4
	제10조 사업대상	• 4
	제11조 신청자격	• 4
	제12조 신청 및 접수	• 4
	제13조 평가	.5
	제14조 선정	.5
	제15조 협약	.5
	제16조 선정 취소	.5
저	4장 사내벤처 운영 및 지원	6
	제17조 사내벤처팀 운영	. 6
	제18조 복무지원	. 6
	제19조 예산지원	. 6
	제20조 경영ㆍ기술 지원	. 6

게드자 시	·내벤처 관리 ······	G
711978 AT	'내뉀시 전디	U
제21조	구성원의 변경 및 중단	7
제22조	중간점검	7
제23조	최종평가	7
제24조	성과보상	7
제6장 기	타사항	8
제25조	이의신청	8
제26조	비밀누설금지 의무	8
부 칙		8

### 사내벤처 운영규정

2021.04.19. 제정(규정 제1329호) 2022.06.17. 개정(규정 제1377호) 2022.12.28. 개정(규정 제1398호)

### 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임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아이디어 등으로 사내벤처를 추진하는 경우 그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**제2조(용어의 정의)**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2.06.17.>
  - 1. "사내벤처"란 한국교통안전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한다) 임·직원이 사내 자원을 활용하여 공단 내부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.
  - 2. "사내벤처팀"이란 신규사업을 개발하거나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하여 공단으로부터 자율적·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을 말한다.
  - 3. "담당부서"란 「직제규정」 등에 따라 사내벤처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. <개정 2022.06.17.>
  - 4. "평가위원회"란 사내벤처 관련 평가를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. <개정 2022.06.17.>
  - 5. "심의위원회"란 사내벤처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. <개정 2022.06.17.>
  - 6. "중간점검"이란 사내벤처팀의 활동 중 사업추진현황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22.06.17.>
  - 7. "최종평가"란 종료된 과제에 대하여 "분사창업", "사내사업화", "단순 완료", "실패" 여부를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22.06.17.>
- 제3조(다른 법령 및 제규정과의 관계) 사내벤처와 관련된 제반사항은 법령, 정관 및 다른 사 규에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. <개정 2022.06.17.>

### 제2장 추진체계

- 제4조(담당부서의 역할)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- 1. 사내벤처 아이디어 공모 및 접수
  - 2. 아이디어 제안서.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위원회 개최

- 3.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른 심의위원회 상정
- 4. 사내벤처팀에 대한 중간점검, 최종평가 관련 업무
- 5. 사내벤처팀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
- 6. 사내벤처 홍보 및 활성화 유도
- 7. 그 밖에 사내벤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<개정 2022.06.17.>

### 제5조(사내벤처팀 이행사항) 사내벤처팀은 다음 각 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- 1. 사업목표의 달성 등 사업계획에 명시된 계획의 성실한 이행 <개정 2022.06.17.>
- 2. 관련 법률, 규정, 공고의 숙지와 준수 <개정 2022.06.17.>
- 3. 공단에서 시행하는 사내벤처 지원 프로그램 등 참여 <개정 2022.06.17.>
- 4. 그 밖에 점검, 평가, 개선 등을 위해 공단이 요청하는 사항 <개정 2022.06.17.>

## 제6조(평가위원회)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- 1. 사내벤처 아이디어의 평가 · 상정, 사내벤처팀 최종평가 <개정 2022.06.17.>
- 2. 그 밖에 사업관리 등을 위해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 <개정 2022.06.17.>
- 3.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
- ② 평가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평가위원회는 위원장, 내부 임직원,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, 총원은 5인 이내로 한다. <개정 2022.06.17.>
- 2. 위원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. <개정 2022.06.17.>
- 3. 내부위원은 3급 이상 직원 중 위원장이 임명하며, 외부위원은 해당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22.06.17.>
- 4. 평가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담당부서의 직원으로 한다. <신설 2022.06.17.>
- ③ 평가위원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평가위원회는 안건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- 2.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3.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지 않는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.
- ④ 평가위원이 다음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는 평가위원에서 해촉되고, 새로운 평가위원을 선임한다.
- 1. 사망, 이민, 퇴직, 본인고사, 연락두절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자
- 2. 비밀유지 서약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
- 3. 그 밖에 평가위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<개정 2022.06.17.>
- ⑤ 공단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는 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- 제7조(심의위원회)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내벤처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·운영한다.
  - 1. 사내벤처팀 선정 및 취소
  - 2. 사내벤처팀의 공단 보유기술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
  - 3. 사내벤처팀 협약 체결, 변경, 해지 및 사업 중단
  - 4. 사내벤처팀 구성원의 증원, 변경에 관한 사항
  - 5. 사내벤처팀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
  - 6. 사내벤처팀 최종평가결과 및 사업비 정산금액 확정
  - 7. 사내벤처팀 성과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
  - 8. 그 밖에 사내벤처 운영 관련하여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<개정 2022.06.17.>
  -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심의위원회는 위원장, 내부 임직원,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, 총원은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2.06.17.>
  - 2. 위원장은 기획본부장으로 한다. <개정 2022.06.17.>
  - 3. 내부위원은 2급 이상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 및 이에 준하는 자격증을 보유한 자, 외부위원은 해당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 다만, 예산 담당부서의장은 직급에 상관없이 당연직으로 임명된다. <개정 2022.06.17.>
  - 4. 심의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. <신설 2022.06.17.>
  - ③ 심의위원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심의위원회는 안건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  - 2.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- 3.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지 않는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.
  - 4. 간사는 심의내용 및 결과를 명시한 회의록 등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.
  - ④ 위원의 해촉 기준은 제6조제4항을 따르고, 수당지급은 제6조제5항을 따른다.
- 제8조(서면심의) 평가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.
  - 1. 사내벤처 구성원에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
  - 2. 긴급을 요하는 사항
  - 3. 그 밖에 사업제안 철회서 제출 등으로 위원장이 사내벤처 위원회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 정하는 사항 <개정 2022.06.17.>
- 제9조(위원의 제척 등) ①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평가·심의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된다.
  - ② 사내벤처 신청자는 해당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

청을 할 수 있고,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평가·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.

### 제3장 사내벤처 신청 및 선정

- 제10조(사업대상) ① 사내벤처의 사업대상은 공단의 경영전략에 부합되고,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독립된 조직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다음 각호와 같다.
  - 1. 공단 또는 임직원의 보유 기술,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사업화가 가능한 사업
  - 2. 「한국교통안전공단법」 제6조에 따른 기존 사업 분야와 연계하여 시너지 창출이 기대되는 사업
  - 3. 그 외 공단의 경영혁신 및 프로세스 혁신이 예상되는 사업
 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는 사내벤처로 인정될 수 없다.
  - 1. 국내 · 외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거나,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사업
  - 2. 공단의 기업이념 또는 목표에 반하는 사업
- 제11조(신청자격) ① 신청자격은 공단에 재직 중인 임직원으로 공고일 기준으로 근무기간이 만 1년 이상이어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내벤처를 신청할 수 없으며, 팀원으로도 참여할 수 없다.
  - 1. 공고일 기준으로 퇴직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
  - 2. 공단의 「인사규정」 제64조에 따라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공단의 「인사규정」 제75 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
  - 3. 제16조에 따라 사내벤처팀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
  - 4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이력이 있는 경우
  - ③ 신청인은 사내벤처팀의 팀장이 되며, 외부 인력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인력을 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를 거쳐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거나 민간 벤처 또는 대학 창업 동아리 등과 공동으로 사내벤처를 운영할 수 있다. 다만, 사내벤처팀은 최대 5인(팀장 포함)을 초과할 수 없으며,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증원할 수 있다.
  - ④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내벤처를 신청하는 경우 이 중 대표자를 정하여야 하며, 이 규정에 따른 권리 및 책임은 동등하게 적용한다. <개정 2022.06.17.>
  - ⑤ 구체적인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은 해당 공고에서 정할 수 있다.

- 제12조(신청 및 접수) ① 사내벤처의 신청 및 접수는 별도 공고에 따르며, 그 횟수 및 시기는 공단의 운영현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 다만, 접수 마감일로부터 15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
  - ② 사내벤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내벤처 신청서,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추진계획서,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 기술 내역서, 별지 제4호서식의 사내벤처 신청자 이력사항을 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13조(평가) ① 담당부서는 사내벤처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자격 등 공고상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평가위원회를 소집한다.
  - ② 평가위원회는 사내벤처 신청 접수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별표 1의 평가표에 따라 서면평가를 실시하고, 총점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. <개정 2022.06.17.>
- 제14조(선정) 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와 평가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 및 지원 범위 내에서 사내벤처팀을 선정하며, 이사장의 승인을 통해 최종 결정한다.
- 제15조(협약) ① 공단은 최종 선정된 사내벤처팀에게 세부 실행계획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, 사내벤처팀은 별지 제5호서식의 사내벤처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여 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  - ② 협약은 공단과 사내벤처팀 간의 협의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.
  - ③ 협약기간은 1년 단위로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, 사내벤처팀은 협약기간을 변경하고 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내벤처 협약기간 변경 신청서를 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담 당부서에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2.06.17.>
- 제16조(선정 취소)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내벤처팀 선정을 취소하거나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 - 1. 사내벤처 신청서 등 관련서류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
  - 2. 공단이 지원한 자금, 시설 등을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
  - 3. 사내벤처 구성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단에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으로 손해를 끼친 경우
  - 4. 공단의 승인 없이 주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
  - 5. 사내벤처 구성원이 제6조제4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
  - 6. 제15조제1항의 세부 실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제안 철회서를 제출한 경우
  - 7. 제22조제4항에 따라 중간점검 평가 결과가 부진한 경우
  - 8. 제26조의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
  - 9. 그 외 사내벤처 운영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
  - ② 공단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사내벤처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

수 있다.

### 제4장 사내벤처 운영 및 지원

- 제17조(사내벤처팀 운영) ① 공단은 사내벤처팀을 담당부서 소속 내 별도 조직으로 구성하고, 구성원을 사내벤처팀으로 발령 조치할 수 있다.
  - ② 공단은 협약기간 동안 사내벤처팀에게 사무공간, 부대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, 구성원의 인사, 보수, 복지 등은 사규를 준용한다.
- 제18조(복무지원) ① 공단은 사규 내에서 사내벤처팀 근태의 자율성을 보장하되, 근태결재는 사내벤처팀 팀장의 경우 담당부서의 장, 팀원의 경우 사내벤처팀 팀장의 전결로 처리한다. <개정 2022.06.17.>
  - ② 공단은 사내벤처팀의 구성원을 활동기간 중 다른 팀으로 전보하지 않는다. 다만, 사내벤처팀의 구성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전보할 수 있다. <개정 2022.06.17.>
  - ③ 공단은 사내벤처 협약기간의 종료 또는 해지에 따라 현업으로 복귀하는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. <개정 2022.06.17.>
- 제19조(예산지원) ① 공단은 사내벤처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소요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, 이사장의 방침에 따라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.
  - 1. 연구비, 장비구입비, 재료비, 교육훈련비, 인쇄비, 업무추진비, 출장비, 통신비 등 사업과 관련 된 제비용
  - 2. 그 밖에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사업수행 비용 등 <개정 2022.06.17.>
  - ② 사내벤처팀은 예산의 별도관리를 시행하고, 사업계획 내 예산집행은 사내벤처팀 팀장의 전결로 처리한다.
- 제20조(경영·기술 지원) ① 담당부서는 사내벤처팀의 행정적, 재무적 업무에 대하여 지원요 청이 있는 경우 관련부서와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.
  - ② 공단은 사내벤처팀이 공단의 보유기술 등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,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.
  - ③ 공단은 사내벤처팀의 경영·기술자문, 기술 관련 장비 및 인력 요청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.
  - ④ 공단은 제23조의 최종평가 결과 분사창업이 결정된 사내벤처팀이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는 통상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, 통상실시권의 기간, 지역, 내용 및 비용부담 등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 <개정 2022.06.17.>

### 제5장 사내벤처 관리

- 제21조(구성원의 변경 및 중단) ① 담당부서는 사내벤처팀의 사업추진계획 대비 실적이 현격히 부진할 경우, 구성원의 교체 또는 활동의 중단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.
  - ② 사내벤처팀의 팀장은 운영여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팀원의 교체 또는 활동의 중단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.
- 제22조(중간점검) ① 담당부서는 사내벤처팀의 사업추진현황 등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, 사내벤처팀의 팀장은 담당부서의 요구가 있을 경우 운영실적, 향후 계획 등을 담당부서에 보고해야 한다.
  - ② 담당부서는 사내벤처팀의 중간점검 결과, 사업추진계획 대비 실적이 부진하거나 공단 경영여건 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위원회를 지체없이 소집한다.
  - ③ 평가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운영 성과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내벤처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  - ④ 평가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통해 사내벤처팀의 협약 해지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.
- 제23조(최종평가) ① 사내벤처팀은 협약기간 종료일 14일 전까지 최종보고서를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다.
  - 1. 결과물 제작 과정 및 결과물
  - 2. 사업목표 달성 여부 및 마케팅 활동 현황
  - 3.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지식 재산권 현황, 매출액 등 성과 수준 <개정 2022.06.17.>
  - 4. 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
  - ③ 제22조제4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는 사내벤처팀의 의지 및 수행성과 등을 고려하여 "분사창업", "사내사업화", "단순완료", "실패"로 하고,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다. 다만, 분사창업 사에는 퇴직하여야 하며, 사내벤처 팀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<개정 2022.12.28.>
  - ④ 공단은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정산 및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  - 1. 사내사업화하는 경우, 사내벤처팀 구성원의 원 소속 복귀를 원칙으로 하나 원하는 경우 신사업 관련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.
  - 2. 단순완료 또는 실패의 경우, 사내벤처팀 구성원의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어야 하며 원 소속 복귀를 원칙으로 한다.
  - ⑤ 제4항제2호에도 불구하고, 회사의 내부 상황 등으로 인하여 원 소속 복귀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이에 상응하는 부서로 발령 조치한다.
- 제24조(성과보상) ① 사내벤처로 인한 수입은 공단에 귀속되고, 제23조의 최종평가 결과 사내 사업화를 추진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업성과 또는 운영성과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다.
  - ② 제1항의 영업성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한다.

- 1. 영업성과 = 총매출액 총비용
- 2. 총매출액은 해당 연도 서비스 제공 및 제품의 판매 등으로 인한 총수입
- 3. 총비용은 제19조제1항 각 호의 비용
- ③ 제1항의 운영성과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점수로 평가한다.
- 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성과보상금 지급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, 사내벤처 구성원수에 따라 해당 금액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보상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#### 1. 영업성과

영업성과	30억원 초과	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	10억원 이하
보상금	(영업성과-30억원)×3% +3억원 이내	(영업성과-10억원) × 5% + 2억원 이내	영업성과×20% 이내

#### 2. 운영성과

평균 평가점수	95점 이상	90점 이상	85점 이상
보상금	3천만원	1천만원	5백만원

- ⑤ 성과보상금은 영업성과에 따른 보상금과 운영성과에 따른 보상금 중 더 큰 금액을 적용하여 지급한다.
- ⑥ 성과보상금은 포상비로 편성하여 집행하며, 결정된 성과보상금 지급액을 예산편성 시에 반영하다.
- ⑦ 성과보상금은 예산 확정 후 다음 달에 지급한다.

### 제6장 기타사항

- 제25조(이의신청) ① 담당부서, 평가위원회, 심의위원회의 결정 또는 평가결과, 심의결과(이하 '결정 등'이라 한다)에 이의가 있는 사내벤처 구성원은 결정 등이 발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  - ② 담당부서, 평가위원회의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평가위원회가, 심의위원회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심의위원회가 처리한다.
  - ③ 제1항의 이의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담당부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되, 결정 등에 대하여 이의하는 구체적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.
- 제26조(비밀누설금지 의무) 사내벤처팀 및 분사기업의 전·현직 구성원은 재직 및 창업 시취득한 정보를 공단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
### 부 칙 <규정 제1329호, 2021.04.19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규정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내부결재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서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### 부 칙 <규정 제1377호, 2022.06.17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규정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일지라도 평가위원회·심의위원회 구성, 협약기간은 개정규정을 따른다.

### 부 칙 <규정 제1398호., 2022.12.28.>

이 규정은 2022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## 사내벤처 사업계획 평가표

사업명		접수	번호				
심사요건	평 가 항 목	A	В	С	D	Е	
	·사업 목표 및 계획의 구체성	10	8	6	4	2	
타당성 (30점)	·사업 추진 필요성 및 비즈니스 모델의 적정성	10	8	6	4	2	
	·공단 사업과의 관련성	10	8	6	4	2	
혁신성	·기술 및 아이디어의 창의성	15	12	9	6	3	
(30점)	·사회 전반으로의 파급에 따른 기대효과	15	12	9	6	3	
	·시장 규모 및 발전 가능성	10	8	6	4	2	
경제성 (25점)	·수익성(현재가치, 투자비 회수기간) 확보 여부	10	8	6	4	2	
	·투자금액의 적정성	5	4	3	2	1	
구성원	·팀원 구성의 적정성	5	4	3	2	1	
평가	·사업에 필요한 지식 및 경험 보유 수준	5	4	3	2	1	
(15점)	·사업에 대한 도전 의지	5	4	3	2	1	
평가결과	총 점						
상기와 같이 평가하였음을 확인함. 년 월 일 평가의의 스 소·							
	평가위원 소 속 :						

직 급: 성 명:

(서 명)

## 운영성과 평가표

사업명		접스	구번호 -	-		
심사요건	평 가 항 목	A	В	С	D	Е

성과물	·구성원의 참여 성실성	10	8	6	4	2
제작 과정 및 성과물	·사규 및 관련 지침 준수 여부	10	8	6	4	2
(30점)	·성과물 제작을 위한 노력	10	8	6	4	2
목표 달성 및 마케팅	·사업목표 달성 여부	10	8	6	4	2
활동 현황 (20점)	·성과물 판매 및 홍보를 위한 노력	10	8	6	4	2
사업 추진 성과 (30점)	·금전적 성과(매출액 등), 비금전적 성과(지식 재산권 현황) 달성 수준	30	24	18	12	6
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	·사업 확장 가능성	10	8	6	4	2
(20점)	·사업 추진에 따른 사회 기여도	10	8	6	4	2
평가결과	총 점					

상기와 같이 평가하였음을 확인함.

년 월 일

평가위원 소 속 :

직 급:

성 명: (서 명)

■ 사내벤처 운영규정 [별지 제1호서식](제12조 관련)

## 사내벤처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전담부서에서 작성합니다.

접수일자			관리번호			
	부서명		직급			
작성자	성명		전화번호			
	사업명 ○ 사업유형 ○(연구/기술, 서비스/시스템, 경영 기술유형 ○(공단보유기술, 자기보유기술, 연 주요내용 ○					
신청 내용						
	사내벤처 추진기간 20~ 20 (	년 :	개월)			
		17101		년	월	일
담당누	<sup>소</sup> <b>브서의 장</b> 귀하	····청인			(서명 또는	인)
첨부서류	1. 사업추진계획서 2. 사용 기술 내역서 3. 신청자 이력사항					

■ 사내벤처 운영규정 [별지 제2호서식](제12조 관련)

## 사업추진계획서

- 1. 사업개요: 목적 및 사업추진배경, 주요 사업내용 요약, 팀원 구성 등
- 2. 환경분석: 경제·사회 환경분석, 시장분석(목표고객, 시장규모 등), 경쟁상황 분석 등
- 3. 사업 아이템의 사업성: 세부사업내용, 사업추진전략, 제품화계획, 기대효과 등
  - ㅇ 제품(서비스), 혁신의 주요 내용 및 경쟁력
  - o 기술개발. 제품화 계획 및 차별화 전략
  - ㅇ 영업활동, 마케팅전략 및 판매계획
  - ㅇ 기대효과(정성적ㆍ정량적) 및 고객(국민) 불편 해소 여부
  - ㅇ 미래 청사진(향후 기대되는 사업의 미래 모습)
- 4. 한계점·애로사항 및 대책: 발생가능한 문제점과 예상되는 위험 및 이에 대한 대책
- 5. 재무계획: 예산계획, 수익성 분석(매출·성과예측, 손익분기점 분석) 등
- 6. 추진일정: 사업추진 계획서에서 제안된 사항에 대한 일정계획
- 7. 공단 지원 요청사항: 경영자원(기술, 특허 등) 사용, 경영·기술자문 및 그 밖의 지원사항

#### ※ 참고사항

- ㅇ 각 항목별 내용은 가급적 세부적으로 작성
- ㅇ 사업추진계획서는 3개년 기준으로 작성하며 요약서 첨부
- ㅇ 사업추진계획서 상에 제시된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(통계, 논문 등)
- ㅇ 혁신사업의 경우 기술개발, 제품화계획, 영업계획, 수익성 분석 등을 생략할 수 있음

■ 사내벤처 운영규정 [별지 제3호서식](제12조 관련)

## 사용 기술 내역서

- 1. 사용 기술명
- 2. 사용기술의 적합성 및 사업화(상품화)가능성에 대한 설명
- 3. 국내·외 관련기술과의 비교
- 4. 기술사용으로 인한 공단과의 관련성
  - 가. 창업으로 인한 공단 사업과의 관련성
  - 나. 공단 연구개발과제와의 관련성
  - 다. 기타 공단 업무와의 관련성

## 사내벤처 신청자 이력사항

소 속				성 명	
생년월일 (연령)		(민	는 세)	학 력	
	기	간			소속
	부터	까지	부서명	담당업무	주요 직무내역
경 력					
			특기사항(상	벌 및 자격사항	)
			사내벤처 관련	된 직무수행 나	용

■ 사내벤처 운영규정 [별지 제5호서식](제15조 관련)

## 사내벤처 업무협약서

한국교통안전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한다.)과 사내벤처 대표자(이하 "대표자"라 한다.)는 공단 사내벤처 제도 운영을 통한 공단 경영성과 개선을 위해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,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### 제1조(목적)

본 협약은 사내벤처 제도 도입·운영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및 좋은 일자리 창출 등 공단 경영성과 개선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# 제2조(협력)

공단과 대표자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화 및 경영혁신 등을 이끌어낸다는 사내벤처의 도입 취지를 인식하고, 상호간 신의와 성실로서 적극 협력한다.

### 제3조(협약기간)

협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. 다만, 필요할 경우 공단과 대표자간 협의를 통해 협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.

### 제4조(성실 이행)

공단과 대표자는 사내벤처 운영지침에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.

#### 제5조(기타)

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단과 대표자간 별도 협의로 정한다.

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, 공단과 대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 년 월 일

한국교통안전공단 사내벤처 이사장 ○ ○ ○ (인) 대표자 ○ ○ ○ (인) ■ 사내벤처 운영규정 [별지 제6호서식](제15조 관련)

## 사내벤처 협약기간 변경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전담부서에서 작성합니다.

접수일자		관리번호					처리기간	14'	일	
	부서명						직급			
작성자	성명						전화번호			
	<사업명> <협약기간>									
	(당초) 20									
	(변경) 20	~ 20 .		(	년	개월)				
	<협약기간 변경사유>									
	0									
신청	O _									
내용										
	1							13	월	일
			시원스	ı				년	펻	걸
담당투	<b>부서의 장</b> 귀하		신청인	<u>'</u>				( .	서명 또는	인)
첨부서류	1. 필요시 제출									

■ 사내벤처 운영규정 [별지 제7호서식](제16조 관련)

## 사업제안 철회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전담부서에서 작성합니다.

접수일자		관리번호	처리기간	14일
	부서명		직급	
작성자	성명		전화번호	
	<사업명>			
	<철회사유>			
	0			
	0			
	_			
신청				
내용				
		시원이		년 월 일
다다	<b>부서의 장</b> 귀하	신청인		(서명 또는 인)
첨부서류	- 1. 필요시 제출			

■ 사내벤처 운영규정 [별지 제8호서식](제25조 관련)

### 이의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전담부서에서 작성합니다.

접수일자		관리번호	처리기간	14일
작성자	부서명 성명		직급 전화번호	
신청 내용	<사업명> <이의신청사유> ○ ○ -			
담당부	<b>부서의 장</b> 귀하	신청인		<b>년 월 일</b> (서명 또는 인)
첨부서류	- 1. 필요시 제출			